

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4. 22) 상정
- 제16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4. 2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·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제한 규정을 삭제·정비함(안 제19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 있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 있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 있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 있음

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탁아등”을 “탁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“특별한 시설설치”라 함은”을 ““특별한 시설설치”란”으로 하며, “기타시설등”을 “그 밖에 시설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요율) 제6조에 따른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5일이내”를 “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각각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6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·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13조제1항제3호·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5일전에”를 “5일 전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설비등을”를 “설비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“5일이내에”를 “5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하고, “기타시설”을 “그 밖의 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호 중 “정신이상자 또는 만취자”를 “술에 취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78호
의결 년월일	2010. 4. 26 (제160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4. 1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·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제한 규정을 삭제·정비함(안 제19조).

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탁아등”을 “탁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“특별한 시설설치”라 함은”을 ““특별한 시설설치”란”으로 하며, “기타시설등”을 “그 밖에 시설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요율) 제6조에 따른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5일이내”를 “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각각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6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· 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13조제1항제3호 ·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5일전에”를 “5일 전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설비등을”를 “설비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“5일이내에”를 “5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하고, “기타시설”을 “그 밖의 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호 중 “정신이상자 또는 만취자”를 “술에 취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사무실사용)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사무실사용) ----- ----- ----- -----범위에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사용요율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사용요율) 제6조에 따른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
<p>제8조(사용제한) (생략) 1. 2. (생략) 3.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</p>	<p>제8조(사용제한) (현행과 같음) 1.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9조(사용료) ①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및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④·⑤ (생략)</p>	<p>제9조(사용료) ① ----- ----- -----따른----- -----. ② 제4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5일 이내----- 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관람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관람권의 매표·수표는 회관 및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매 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0조(관람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범위에서----- 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보증금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. 다만, 보증금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보증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제16조제2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허가의 취소) ① (생략)</p> <p>1.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천재지변·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</p> <p>4.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13조(허가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따른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4. 그 밖에 -----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사용료 반환) (생략)</p> <p>1.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</p>	<p>제14조(사용료 반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제13조제1항제3호·제4호----- ----- 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5일 전에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원상복구) ① 회관 및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원상복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설비 등을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일 이내에 -----.</p>
<p>제17조(손해배상) ① 사용자가 회관 및 복지관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·기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</p>	<p>제17조(손해배상) ① ----- ----- 사용기간 중 ----- ----- 그 밖의 시설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입장 및 관람제한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염병 질환자 2. <u>정신이상자 또는 만취자</u>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. <u>기타</u>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	<p>제19조(입장 및 관람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<u>술에 취한 자</u> 3. ----- -----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<p>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